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26-11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확정 통보」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1. 17.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처분 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0비	'06.10.2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124 (이하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생계수급자 선정(2026.1.1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 국민취업지원제 취업지원 중료 (종료일 26.1.16) •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보관기일 경과

4. 공고기간: **2026. 11. 17. ~ 2026. 12. 1. (15일간)**
5. 문의사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윤미선(☎ 031-828-0875)